
2018년 1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8.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8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7.27.(금) 10:00 ~ 12:25
-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김지미, 권혜진, 송시강, 안희철, 한상희
 - 배 석 :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직권심의 1건, 이의신청 4건
 - (2018-44)우이신설경전철 운행지연현황(지연횟수, 시간대별 지연현황, 지연사유별 건수, 향후대책 등)
 - (2018-45)광역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고문, 법률고문 명단(성명, 위촉시기, 자격, 소속기관)
 - (2018-46)주택법 전매행위 제한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질의한 문서 및 답변문서
 - (2018-47)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조사결과 보고서
 - (2018-48)본인이 과거 사용했던 폰 번호를 이용하여 제기한 민원의 내용 및 처리결과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인용
- 부분인용
- 인용
- 기각
- 기각

【 의안번호 2018-44 직권심의 】

안건명 : 우이신설경전철 운행지연현황(지연횟수, 시간대별 지연현황, 지연 사유별 건수, 향후대책 등)

〈○○○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1정보공개심의위원장 김지미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위원으로 권혜진 위원님, 송시강 위원님, 안희철 위원님, 한상희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직권심의 1건, 이의신청 4건입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 건마다 상정안건에 대해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주심위원님께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각 주심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7명 중에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 제 1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44호 도시철도설비부 소관 직권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주무관>

○ 안녕하세요? 도시철도설비부 ○○○ 주무관입니다.

<○○○ 위원>

○ 간사는 도시철도설비부 소관 안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 의안번호 제2018-44호 도시철도설비부 소관 직권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우이신설경전철 운행지연 현황에 대하여 청구하였으나, 주관 부서에서는 제3자 의견조치를 거쳐 경전철 운영상 중요한 정보로서 운영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실시협약에 따라 비공개 의무가 부여된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1항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비공개 결정 적정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본 심의회에 직권심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주무관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 주무관>

○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직권심의 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신 이유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어떤 점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신 것인지, 비공개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주무관〉

○ 이 요구를 하신 분이 ○○○○ 기자이고, 개통초기에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보니 우이신설 경전철에 지연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0~5분, 5분~10분, 10분~15분의 지연현황과 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10분 이하의 지연은 사고로 안 치고 국토부 보고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10분 이상 지연이 발생한 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 미묘한 사항인데 이러한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철도 운영사에서 공개한 적이 없는 것 같고, TV에서도 철도 쪽에서 운행장애가 있을 때 세세한 것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 ○○○○ 기자가 우이신설에 대해서 큰 기사를 쓰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분 이상 지연은 국토부 보고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미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우이신설 대표회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기자가 당시에 국회의원을 통해 받은 내용도 보면 10분 이상의 지연은 없고, 다 경미한 지연인데도 불구하고 기사제목을 ‘우이신설선 탈선 위기’ 이렇게 강하게 나갔습니다.

- 시의원 요구자료로 제가 보낸 것은 ‘이것은 경영상 비밀이기 때문에 감사용으로만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부기를 해서 기자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국회에서 동일한 자료요구가 또 왔는데, 그 때 제가 휴가 중이어서 대직자가 그러한 코멘트를 안 하고 제출해서 그 국회의원이 이 해당 기자한테 보냈습니다.
- 우이신설경전철에서는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보공개법 7호에 따라 법인단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위해, 그러니까 사기업이 자기 영업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그것이 공익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당연히 정보공개를 해야 하고,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인 경우 공개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경영·영업상에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당사자가 그렇게 본다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 우이신설경전철에 시비가 들어간 겁니까? 우이신설경전철하고 서울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주무관〉

- 우이신설경전철은 민자사업입니다. 기존 것은 서울교통공사가 하는데 9호선 1단계와 우이신설경전철도 민자사업입니다. 심의자료를 보시면 2006년 1월 1일 불변가 기준으로 우이신설경전철을 건설하는 데 6,465억이 들었는데 그중에 민간사업자가 3,467억을 부담했고, 나머지 건설보조금 2,998억은 국비하

고 시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 이것은 대부분 민자사업처럼 시공사에서 설계나 시공을 책임 하에 끝내고 준공이 되면 그것을 서울시한테 기부채납한 다음, 30년 동안 영업권을 가져서 해당 건설비를 채우는 방식으로 실시협약이 된 겁니다.

<○○○ 위원>

- 그러면 운행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관리감독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주무관>

- 저희는 시공부서이고, 시공 이후 교통정책과가 해당 운영을 맡아서 하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 교통정책과로 넘어가지 않아서 우리 시공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했었습니다. 그 관련된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국토부 보고대상도 아니고, 경미한 것이고, 별게 아니라면 오히려 바꿔 생각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 주무관>

- 일반시민들은 그 기사를 봤을 때 ‘이것이 기사화됐다는 얘기는 뭔가 심각한 것이고, 우이신설선이 이런 장애가 많으니까 이것을 타지 말아야겠다. 위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용시민한테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굳이 기사화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 위원>

- 청구서에는 0~5분까지 몇 회, 5~10분까지 몇 회, 이런 식으로 5분 단위로

쪼개서 0분~60분까지 운행지연 시간대별 현황을 요청했는데, 열차가 지연된 시간이 5분이라는 의미입니까?

<○○○ 주무관>

- 그렇습니다. KTX를 타시면 10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10시 5분에 왔다. 그러면 5분 지연된 것이죠. 그 현황을 달리는 겁니다.

<○○○ 위원>

- 그런데 이런 정보가 있기는 있습니까?

<○○○ 주무관>

- 개통 초기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5분씩 나누어 가지고 지연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 주무관>

- 네, 이미 이것을 청구하기 전에 갖고는 있었습니다.

<○○○ 위원>

- 전체 비공개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일부라도 공개할 것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총 운행횟수는 사실 비밀이 될 이유도 없고, 이것을 알린다고 해 가지고 영업에 지장을 준다거나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나눠서 판단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운행지연 이유별 건수라는 것은 굉장히 공익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차가 지

연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것이 왜 지연됐는지, 고장인 것인지, 아니면 운전미숙인 것인지,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나누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죠.

<○○○ 위원>

○ 지금도 이렇게 지연이 발생합니까?

<○○○ 주무관>

○ 지금 저희가 시스템 고장으로 지연되는 것은 없고, 승하차할 때 사람들이,

<○○○ 위원>

○ 그렇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지연이죠.

<○○○ 주무관>

○ 네, 시스템 고장에 의해서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 만약에 정보 요구를 한 사람이 ○○○○ 기자가 아니고 맨날 이것으로 출퇴근 하는 일반시민이라고 한다면 공개가 가능할까요? 아까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이상한 보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보도가 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시민이 본인이 궁금해서 요청하면 공개가 가능합니까?

<○○○ 주무관>

○ 아무래도 일반시민한테는 공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위원>

- 제일 문제는 맨 마지막 것 같은데, 운행지연 이유별 건수 부분인데 몇 분 지 연했느냐,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수 부분에서 뭔가 시스템에 하자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재발할 것 같더라는 것이 있습니까?

<○○○ 주무관>

- 이 당시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예상하지 못 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했습니다.

<○○○ 위원>

- 제가 봐도 지연사유는 대체로 시스템 적응과정에서 약간의 오차 같은 것이라서 교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일이고, 보도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런 것은 다 고쳤습니다.’라고 반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공개해서 보도가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대처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이분이 이 이후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미 기사를 냈는데, 아주 나쁘게 기사를 내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 위원>

-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다 보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니까요.

<○○○ 위원>

-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7년 11월 기사인데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 기사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상 불이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승객수

가 줄었다든지,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 주무관>

- 그런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이 기사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다 보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이용시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죠.

<○○○ 위원>

- 비공개 사유 자체가 이 기사와 같은 형태로 나가면 불안감을 조성하고 승객수가 줄 것이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실제 경영상에 불이익을 줬는지 판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1월이니까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

<○○○ 주무관>

-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우이신설 노선쪽은 교통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가도 영업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영업적인 것도 있지만 회사는 기업 이미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사면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자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사업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지가 나빠지면 이 해당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 위원>

○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료를 보면 다 미주·과주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기사를 보니 약 두 달 동안 19회 운행지연인데, 2호선은 하루에도 19회 운행지연이 될 정도로, 그러면 이것이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불안한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주무관〉

○ 이 이데일리 기자의 기사 제목을 보시면 ‘우이신설선 탈선 위기’입니다.

〈○○○ 위원〉

○ 여기에서 탈선이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전철이 진짜 탈선할 정도의 기술적 결함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수요예측 실패로 수익이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래 계획에서 탈선할 위기에 있다라는 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라면 이 기사를 읽고서 우이신설선이 진짜로 철로에서 탈선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할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우이신설 초반 개통할 때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해서 많은 기자들이 몰리고 우이신설선이 포커스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탈선이라고 보면 보통 뒤에 있는 내용을 철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 위원〉

-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기사의 내용이나 제목과 이것을 공개하냐, 마냐의 내용은 완전 별개의 내용일 것이고요. 그렇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 다음에 기자가 이것을 활용해서 악의적인 이상한 기사를 쓰는 것과 이것을 공개하냐, 마냐는 또 별개의 것이죠. 그렇죠?

<○○○ 주무관>

- 네.

<○○○ 위원>

- 만약에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언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대처를 한다거나 이것도 별개의 것이에요. 맞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렇다면 결국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자료가 정말로 이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이 사업은 일반 회사의 사적인 사업이 아니라 경전철 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은 당연히 지연되

냐, 마냐에 따라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렇다면 얼마나 지연됐는지 분명 일반시민들은 궁금해 할 수 있고, 또 본래의 속성상 자동차가 지연되듯이 경전철이라는 것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면 이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침해되는 겁니까?

<○○○ 주무관>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드시피 이 해당 사업자가 우이신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선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 위원>

○ 다른 노선에서도, 예컨대 2호선 사업자, 국철 사업자, 이런 데에서도 다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자나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미주나 과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죠.

<○○○ 위원>

○ 다른 사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업체만 미주·과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미주나 과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2호선은 워낙 아침에 붐비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번 지연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공개됐을 때 공공의 이익보다 경영상·영업상 침해되는 피해가 과연 더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무관〉

○ 만약에 우이신설 말고 다른 노선에서도 이런 것이 공개되는 선례가 있다면,

〈○○○ 위원〉

○ 이것이 선례가 되면 됩니다.

〈○○○ 주무관〉

○ 이것이 선례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저희가 신림선은 시공에 들어갔고 동북선은 설계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을 서울시가 공개하겠다고 결정하면 나중에 개통할 때쯤에 우리한테 자세한 정보를 안줄 수 있습니다. 추돌사고가 발생했거나 정말 문제가 큰 것은 공익에 의해서 우리시로 제출할 수 있지만 미미한 것은 앞으로 안 주게 됩니다.

〈○○○ 위원〉

○ 5분 이상 지연했을 경우는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무관〉

○ 10분 이상입니다.

〈○○○ 위원〉

○ 10분 이상은 무조건 주는 겁니까?

<○○○ 주무관>

- 10분 이상 지연은 사고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국토부도 보고되고 우리도 내 부적 보고가 됩니다.

<○○○ 위원>

- 공식적으로 보고가 됩니까?

<○○○ 주무관>

- 네, 그것은 보고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 위원>

- 이 업체에서 '10분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는 것은 서울시의 사정인 것이고, 우리는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주무관>

- 사고가 아니면 저희한테 줄 의무는 없는 것이죠.

<○○○ 위원>

- 10분 이상은 서울시에서 사고 처리한다면서요.

<○○○ 주무관>

- 네, 국토부 규정이 그렇습니다.

<○○○ 위원>

- 그것이 걱정되시면 앞으로 시행될 사업들은 실시협약을 하면서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조항들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 주무관〉

- 신림선, 동북선은 이미 협약이 됐고 앞으로 면목선이 들어오는데, 보통 실시협약은 KDI 표준실시협약이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그것이 필요하시면 KDI에다가 의견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은 의견이 대체로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 위원〉

-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부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7호 사유를 얘기하시면서 위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부당한 행위가 아니니까 비밀로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첫째는 이것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인지에 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다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용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연이 있었다고 하면 그 지연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고, 다 경험한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 비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 그리고 비밀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비밀이라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에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공개해야 된다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공개할 경우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목, 나목에 해당하게 되면 또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7호 가목, 나목으로 바로 갈 수 없고 먼저 비밀에 해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이 공개될 경우에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되면 가목, 나목으로 가는 구조라는 것이죠.

-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비밀인지 의문이고, 두 번째는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부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지금 우이신설경전철은 민자사업이기는 하나 거액의 국고 내지는 시비가 투자된 사업이고, 청구인이 요청한 내용은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연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라든지, 얼마나 지연됐는지, 이런 것들은 시민의 알권리로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운행 초기에 2만 3,437건 운행에 17건 지연이면 저는 오히려 이것은 아주 좋은 성적이라고 자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주무관〉

-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안 봅니다.

〈○○○ 위원〉

- 하여튼 전부 공개해도 크게 경영상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전부공개 의견이고, 이유는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했을 때 공익이 더 크다고 보여 지므로 전부공개 의견을 드립니다.
-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직권심의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일부〉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44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8-45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광역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고문, 법률고문 명단
(성명, 위촉시기, 자격, 소속기관)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45호 입법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법제관리팀장 ○○○입니다.

〈○○○ 주무관〉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주무관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입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 의안번호 제2018-45호 시의회 입법담당관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광역의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고문, 법률고문의 성명, 위촉시기, 위촉자격, 소속기관에 대해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

서는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동 조항 마목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부산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팀장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팀장〉

-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지금 이의신청한 취지 및 이유에 보면 청구인께서 이런 것을 적어놨는데,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다른 광역시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 청구들이 이미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공개하는 데도 꽤 있을 텐데 여전히 비공개 의견이십니까?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취지에 비해

서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비공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리고 청구를 한 구체적인 사유 중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입법·법률고문의 뇌물수수, 비리행위, 징계 전력 등 그런 것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가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지만 위촉할 때 그분들의 범죄, 전과, 이러한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와 결합이 되어서 이 사람의 사생활 자체가 드러날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고 공개한 것 때문에 생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 시 고문변호사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 팀장〉

- 그렇습니다. 정원이 25명이고 현재는 2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한 자문 수준입니다. 청구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상위법규 등 법규의 해석 및 정책 자문, 의회 생송사건 등에서 법률고문의 직무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의뢰하는 것은 입법단계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정도만 법률적 자문을 위해서 입법·법률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주무관〉

- 청구하신 분하고 통화를 해봤고 청구취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분은 부적격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문제제기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적격한 기준이 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대한변협이나 이쪽에다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청구취지에

맞는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담당자 입장에서 충분히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바에 비해서 단편적인 방법을 쓰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그리고 18개 시도에 동일하게 청구했는데, 광주에서는 비공개를 했고, 다른 광역시도 비공개나 부분공개 처리한 데도 있습니다. 공개처리한 데 말고는 다른 데는 전부 비공개나 부분공개 처리했습니다.

〈○○○ 팀장〉

- 저희도 정보공개법 마목과 관련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저희는 법령에 근거한 위임 조례가 아닌 자체적인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한 사유 자체도 이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뇌물수수라든지 비위행위 징계 전력자들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가 여기에도 있을 것이라라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성명과 현재 직업, 소속된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정보 자체를 여기에서 연결해서 한다면 의도하지 않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비공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

-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청구한 의도가 무엇인가는 다음 문제인 것 같고, 행안부에서 정보공개한 고문변호사 명단을 보면 대상자료인 ‘입법·법률고문 현황’과 거의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입법·법률, 혹은 고문변호사를 운영할 때 정보공개동의서를 아예 받아서 위촉현황을 공개하도록 조례에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저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 위원〉

- 다른 데에서 이미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정보공개에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앞서 가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 주무관〉

- 향후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팀장〉

- 심의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공개를 한다고 할 경우 저희가 이분들한테 동의여부를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개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 명단 중 제일 위에 있는 ○○○ 변호사를 검색해 봤더니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라는 자료가 나오고,

〈○○○ 팀장〉

- 그것은 위원쪽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 서울시의회 사진까지 나오고, 블로그이기는 한데 서울시의회의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게시된 블로그인데, 위촉위원 명단까지 쪽 다 나와 있는데요.

〈○○○ 주무관〉

○ 여기에 계신 전체 분들이 다 공개하신 것은 아닙니다.

<○○○ 위원>

○ 전체 다 나왔습니다.

<○○○ 주무관>

○ 그분이 공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변호사 분들이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에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 위원>

○ 이 블로그는 일반인인 것 같은데, 좀 더 찾아보면 아마 보도자료로 나왔을 것 같은데요. 한 개인이 양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임기가 어떻게 됐고, 경과 같은 것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미 보도자료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진까지 나왔는데요. 거의 중복이 되네요.

<○○○ 팀장>

○ 이것은 현직 정도이고, 경력까지도 요구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 경력이야 쳐보면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 팀장>

○ 네, 개인이 노력에 따라서 검색하는 것이야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는,

<○○○ 위원>

- 정보소통광장에서도 검색을 해 보면 입법·법률고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를 하셨는데 의뢰하는 것에는 지우지 않고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 팀장>

-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후에는 저희도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공개를 하다가 비공개로 넘어가신 겁니까?

<○○○ 주무관>

- 전임자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 팀장>

-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법·법률고문에서 입법 의뢰한 사항에 대해 이분들의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해 준 내용은 해당하신 의원들한테 보낼 때에도 전부 다 가리고 익명 처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

-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보면 이분들은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하실 텐데 공적인 업무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팀장>

○ 네, 맞습니다. 의회업무 자체가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 이런 식의 입법은 적절하지 않다라든가, 적절하다라든가, 이런 것을 이분들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상당부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 팀장>

○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 동의안이라든지, 구성결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의 형태로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의원의 판단입니다.

<○○○ 위원>

○ 그것은 그렇죠. 조례를 보면 위촉사유에는 별게 없습니다. ‘변호사나 법학교수 10년 이상인 사람’, 이것이 다여서 위촉할 때는 범죄경력이 사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 팀장>

○ 범죄경력에 대해서 그럴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해촉조항을 보면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가 5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러한 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과 관련한 업무 자체가 공익성을 상당히 띄고 있기 때문에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의 사람이 자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촉사유는 그것이 없더라도 해촉사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

습니다.

-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지만 시민단체나 아니면 일반시민 개개인이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나 권리는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팀장>

- 시민단체의 역할 중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최초에 위촉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 위원>

- 비위행위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 팀장>

- 네. 그런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고, 사실상 지금 저희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의회의 입안절차 가운데 이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밝히기 싫어하는 업무과 관계 없는 사항을 굳이 정보공개로 통해서 밝혀낼 이유가 없습니다.

<○○○ 위원>

- 해촉사유를 보면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6호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촉되어야 되겠죠.

<○○○ 팀장>

- 그렇죠.

<○○○ 위원>

- 그런데 그것 외에도 품위손상 항목이 있는데, 이런 조항은 사실 공적인 위치가 아니면 잘 안 들어갑니다. 저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알고 있지만 아까 동의여부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공개될 수 있는 것은 맞죠.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경력을 지우고 이 명단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입는 사적 침해와 그것이 공개되어서 혹시라도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나 국민들이 감시하는 공공의 이익 중에서 그래도 사적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팀장〉

- 저희 실무진 쪽은 그것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판단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

- 이분들은 어떻게 위촉되는 겁니까?

〈○○○ 팀장〉

- 여기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장의 추천입니다. 의장이 임명하고 추천절차는 내부에서 추천을 받거나, 저희가 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의견을 구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 위촉과정에서 그러한 검증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조례가 작성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거치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팀장>

- 저희는 변호사자격이나 법학교수 정도의 자격이면 저희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충분한 자격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청문회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윤리적인 것까지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는 보지 않았습시다.

<○○○ 주무관>

-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공익적인 감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담당자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충분히 대한변협에 이분에 대해서 범죄 경력을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경찰청에다가 신원조회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검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담당주무관을 믿으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조회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 주무관>

- 그 외에도 다른 수단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저는 통화를 하면서 충분히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수단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일괄적

으로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하고 결정통지가 나면 이의신청하시겠다고 언급하셔서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 2, 3개 주요경력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마 이분들이 고문으로 위촉될 때 이력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정리한 겁니까?

<○○○ 주무관>

- 제가 정리한 겁니다.

<○○○ 위원>

- 특별히 질문이 또 없으시면 결정을 해도 될 만큼은 된 것 같습니다. 주심위원이신 ○○○ 위원님부터 의견을 주시죠.

<○○○ 위원>

- 입법·법률고문의 명단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에 사생활 비밀, 혹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공적인 감시목적으로 보면 이런 명단이 오히려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개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공개 의견입니다. 6호 마목에 보시면 위탁 위촉의 경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목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협조에 관한 부분이라서 업무의 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렇지만 마목에 가기 전에 개인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공개될 경우에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도자료에서 이미 공개된 바 있는 정보이기도 하고,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위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공공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개 의견입니다.

- 다만, 주요경력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마목에 준해서 성명과 현재의 직업과 소속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 위원님도 성명, 현직까지만 말씀이십니까, 주요경력까지 포함하신 겁니까?

〈○○○ 위원〉

- 저는 주요경력도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저는 주요경력까지 다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전체공개 의견입니다. 참고로 아까 기사를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동정 게시판에 '제9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현황'에서 이 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주요경력 은 사라져 있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도 해서 이렇게까지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주요경력 은 본인이 정리한 자료도 아니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현재에 있느냐는 개인정보 영역에서 보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성명, 소속, 위촉일자는 공개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로 공개 의견입니다. 이것이 개인정보이긴 하나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 의견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 주요경력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저도 주요경력까지는 공개영역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명, 현직, 위촉시기를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되면 공개하되 성명, 현직, 위촉시기를 공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계하면 되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 중 3명이 이의신청 건을 부분인용 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8-45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8-46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주택법 전매행위 제한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질의한 문서 및
답변문서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46호 주택정책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 팀장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주택정책과 주택제도팀장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주택정책과 소관 안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 의안번호 제2018-46호 주택정책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주택 불법 전매 관련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서 국토교통부로 질의한 문서와 회신문서 일체에 대하여 청구하였으나, 주관 부서에서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내부검토가 종료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팀장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팀장>

- 저희 부서 의견은 내부검토 과정이라고 해서 전부 비공개를 했는데 해당 신청인은 2015년부터 서울시에 위 서면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 지금 안건 설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이죠?

<○○○ 팀장>

- 네.

<○○○ 위원>

-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 위원님께서 주 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구인은 자기가 돈 받을 것이 걸려 있는 것이죠?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몇 건이나 신고를 했습니까?

<○○○ 팀장>

○ 1,147건 신고했습니다.

<○○○ 위원>

○ 아, 이분이 그분이고, 다 동일한 건이네요. 그러면 이분에게 그대로 다 지급이 되면 포상금이 얼마가 되죠?

<○○○ 팀장>

○ 1,147건 중에서 현재 지급된 금액이 1억 2,000만원이 지급됐고, 저희가 지급 예상금액으로 예산을 13억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 위원>

○ 현안 중에 하나가 판결문에 불법전매죄로 판결문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죄명이 이것으로 안 되고 다른 것 위반으로 해서 판결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판결문에 죄명이 불법전매에 관한 주택법 위반이 없는데도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판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드러납니까? 왜 불법전매 위반으로 죄명이 안 되었죠? 제가 판결문을 안 봐서,

<○○○ 팀장>

○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주택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행위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매행위를 입증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1,147건을 신고한 겁니다.

- 관련규정 자체가 불법전매행위를 시도지사한테 신고하게 되면 시에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경찰에서는 기소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문이 나오면 그 약식명령에 따른 걸린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147건 전체가 서울시 것은 아니고 그중에 30%가 서울시, 나머지 70%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먼저 났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현재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 주택법 관련 규정상에 모호한 항목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 7월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법령 개정건의를 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부 의사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비공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은 국토부로 보낸 질의사항 중에 확정 판결문에 범죄사실 중 불법전매사항이 안 드러나지만 전체적인 경위로는 불법 전매로 이어지는 경우 포상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것이 확정판결문에 주택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본 겁니다.

〈○○○ 팀장〉

- 판결문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인께서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신청인이 받고자 하는 쟁점은 본인이 1,147건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법 관련 규정에 동일인이 여러 건을 신고했을 경우에 한 건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는 규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한 건으로 봐서 최고금액인

3,000만 원 정도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고, 서울시는 ‘그것은 입법 취지 상 한 건이 아니다. 개별 건 단위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니다.

〈○○○ 위원〉

- 그것도 질의회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질문지 중에 불법 전매라고 신고를 했는데 확정판결 내용에는 불법전매라고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은 불법전매인 경우에 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질의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결문의 약식명령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 인 겁니까?

〈○○○ 팀장〉

- 지금 말씀 주신 질의내용은 부정 당첨, 통장 매매, 위장결혼으로 분양권 취득 후 불법전매로 이어지는 행위이므로 이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이 지급 가능한 여부를 여쭙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

- 네. 왜 이것이 판결문에 안 나오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 팀장〉

- 기존에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이유는 법원에서 불법전매사항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법전매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청인의 생각이지 판결문 자체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그 말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1,160 몇 건이 다 이렇다는 얘기인지,

〈○○○ 팀장〉

- 저희가 일부 건은 지급했는데 모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지금 수사 중에 있거든요. 그중에서,

〈○○○ 위원〉

- 확정판결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 팀장〉

-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하는 것이죠.

〈○○○ 위원〉

- 지금 국토교통부로 세 가지를 질문했지 않습니까? 위장결혼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확정판결이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사만 완료되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한 건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 건으로 봐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질문하신 것이죠?

〈○○○ 팀장〉

-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 전입여부라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

- ○○○ 위원님의 질문은 대상자료1, ‘2017년 1월 26일자 질의서’를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질의를 할 때, “확정판결이나 범죄사실에는 불법 전매사항은 없으나”라고 기재를 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 위원>

○ 서울시가 판단하기에 판결문에 불법전매사항으로 위법하다라는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없으니까 질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 위원>

○ 저도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서울시는 판결문에 불법전매로 위법하다는 명시적 법원의 판단이 없는데도 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냐라는 것이 저도 궁금한 겁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나간 질의서에서 “확정판결문에 범죄사실에는 부정 당첨, 통장 매매, 위장결혼의 내용만 있고, 불법 전매사항은 없으나”라고 서울시가 적었어요.

<○○○ 팀장>

○ 판결문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지금까지 1,161건 중에서 지급된 것은 확정판결문에 분명히 불법전매, 분양권 전매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했고, 딜레이 된 것 중에는 이렇게 불법전매가 특징이 안 되어서 못 준 것이 있고,

<○○○ 팀장>

○ 네, 일부 몇 건이 있습니다.

<○○○ 위원>

○ 이 사람이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한 건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물어본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에 묻고 국토부가 법제처에 물어서 의견을 보내오면 그 의견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입장인 것이죠?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은 회신이 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회신이 안 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 팀장>

○ 네.

<○○○ 위원>

○ 최종적으로 회신이 온 것은 사실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 팀장>

○ 최종회신이 오면 당연히 공개를 할 겁니다.

<○○○ 위원>

- 최종회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판결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 팀장>

- 네.

<○○○ 위원>

- 그것은 공개해도 문제가 없겠죠?

<○○○ 팀장>

- 그것은 공개해도 됩니다.

<○○○ 위원>

-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온 답 상태, ‘법제처에 물어봤으니 더 기다려라’. 이것은 아직 최종적인 것이 아니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된다.

<○○○ 팀장>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었던 판결문에 범죄사실이 특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쥐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온 바가 전혀 없는 건 들은 아직 의사결정 과정에 있고, 공개하는 것이 괜한 혼란을 초래하겠다라고 보는 입장이신 것이죠?

〈○○○ 팀장〉

○ 네.

〈○○○ 위원〉

○ 서울시가 국토부와 법제처에 질의된 사항을 할 때 쟁점마다 갑설, 을설 해서 하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냈다면 ‘일단 우리 입장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상태와, ‘법제처에 물었으니, 지금 제공은 해 주지만 최종은 아니고 지금까지의 우리 입장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혼란이 있을까요?

〈○○○ 위원〉

○ 보통은 주장하는 바를 갑설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고, 어쨌든 적어도 이 문건 안에서는 서울시가 이런 태도를 취하라고 있다는 것이 물어본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확정지어지는 않지 않습니까.

〈○○○ 팀장〉

○ 일단 물어봤으면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 위원〉

○ 당사자들이 포상금 미지급시 문의가 오면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 팀장〉

○ 서울시는 신청하면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지금 서울시 입장은 확정판결이 난 것은 다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판결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 팀장〉

- 맞습니다.

〈○○○ 위원〉

- 계속 판결이 나고 있는데 법제처에서 주지 말라고 의견이 오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 팀장〉

- 맞습니다. 확정판결이 난다면 바로 신고인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통지를 하면 신고인이 신고포상금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인이 유권해석이 나기 전이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신청을 하면 저희는 바로 지급됩니다.

〈○○○ 위원〉

- 질문사항을 보게 되면 지금도 확정판결이 나오면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해 주고 있지만 진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본다.’ 이런 취지로 질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꼭 공개를 거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혼란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을 받아보면 ‘아, 서울시가 지금 나한테 돈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미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 팀장>

- 지금 이 신청인은 서울시가 돈 안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 그러면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공개하시면 되겠네요.

<○○○ 팀장>

- 기관의 의견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처리하는 데 자칫 공개했을 경우 혼선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 위원>

- 타 기관을 우려하거나 할 필요성은 사실 딱히 보이지 않고, 일단은 지금 계속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냐라는 취지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이것을 꼭 공개거부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질의가 총 3건인데 한 건, 회신 온 것은 공개하는 데에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 건은 법제처에 물어봤으니 더 기다려달라고 한 상태이지만 사실 물어본 취지를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주고 있다는 말이죠.

<○○○ 위원>

- 신고인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이죠.

<○○○ 위원>

- 네,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그쪽에 주지 말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것을 굳이 왜 공개를 안 해야

되냐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판결문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갑설이라고 했던 것은, 판결문이 왔네요. 내용 중에 갑설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사실은 드러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사안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진짜 의사결정 과정에 있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구별해서 검토해 보려고 계속 질문 드립니다.

- 지금 판결문이 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 팀장>

- 네.

<○○○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회신이 오면 서울시는 그 회신결과에 따를 겁니까? 그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 팀장>

- 당연하죠. 한 건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법제처의 회신이 온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환수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인은 국토부나 법제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당연히 공문에 따라서 처리할 겁니다.
- 일단 위원님들한테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이 국토부 의견이 서울시 의견하고 반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신청인은 국토부에 가서 또 조치를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선의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

이 명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 위원〉

- 지금 대상자료가 6건인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주실 때 공개, 비공개를 구분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 결정문을 보시면 애매합니다. 64조 위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법 위반이기는 한데 64조가 없습니다. 아예 전매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선정되게끔 하는 통장 양도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것은 64조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사안에서 처벌 받은 것은 전매가 아니라 통장을 양도해서 애당초 처음으로 취득하게 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안 주면 될 것 같은데요.

〈○○○ 팀장〉

- 사실 이 부분이 64조 위반이냐, 아니냐 여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 위원〉

- 그 판결문에 64조 위반이 아니면 안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서울시의 입장은 실질적으로는 신고니까 줘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 사람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갑설을 내셨거든요.

〈○○○ 팀장〉

- 신청인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서울시 의견이 맞는데 국토부에서 나 안 주려고 엮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에다가 요구했는데 국토부에서

는 공개를 못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 위원〉

- 포상금 64조 위반으로 포상금을 준다고 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하지만 내가 분양받은 것을 넘기는 것이 있고, 실제로 처음부터 누군가를 받게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입법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같다고 주시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팀장〉

- 저희는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법 지식이 없어서 서울시 고문변호사한테 여러 번 여쭙봤습니다. 고문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이어서 그런 의견에 기대어서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 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죠?

〈○○○ 위원〉

- 준다는 것이 갑설이었으니까 이미 준 것 같습니다.

〈○○○ 팀장〉

-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줬습니다.

〈○○○ 위원〉

- 주택법 상에 신고포상금은 전매에만 있는 것이죠?

〈○○○ 팀장〉

○ 네.

〈○○○ 위원〉

○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것인데 왜 자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 아무튼 많은 것을 적발하게 해 줬으니까,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팀장〉

○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이 주택법 위반이라고 자문에 기대어서 지급했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당연히 나중에 해결책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포상금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받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 저부터 의견을 내리겠습니다. 문서는 여러 개이지만 종류로 구분하면 세 종류가 됩니다. 첫째는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신, 순수한 전매위반이 아닌 사실 통으로 신고했는데 그 중에는 허위로 분양권을 받게 하도록 조력한 사항을 담은 약식명령 관련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갑설, 을설로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 이것이 첫 번째 사안인데 저는 이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이 그 문서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그야말로 오로지 국토교통부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책상 혼란

도 초래할 수도 있어서 내부검토 과정 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로서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두 번째는 이미 회신이 온 문건입니다. 확정판결일 때만 쥐야 되는지, 수사가 되기만 하면, 기소만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했고, 확정판결일 때만 쥐야 된다는 답변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질의서와 답변서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신청했는데 상한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관한 질의인데, 이것은 당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법령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고, 다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를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적인 답변만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고, 질의서와 중간적인 답변서, 법제처에 물어봤으니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국토부의 중간적인 답변서는 공개하더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첫 번째는 비공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대상 자료로 보면 1번은 비공개, 2, 3번은 공개, 4, 5, 6은 비공개 의견이신 것이죠?

<○○○ 위원>

- 4, 5, 6도 공개입니다.

<○○○ 위원>

○ 네.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시죠.

<○○○ 위원>

○ 1번 사건과 관련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죠?

<○○○ 팀장>

○ 네.

<○○○ 위원>

○ 그러면 서울시의 의견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1번 자료
까지도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부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 위원>

○ 전부 공개요?

<○○○ 위원>

○ 네.

<○○○ 위원>

○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상자료5에서 붙임자료1, 2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
체 공개하면 붙임자료도 공개입니까? 그러니까 관련 법령 어느 부분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도 혹시 안 들어 있습니까?

<○○○ 팀장>

○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현재 없지만,

<○○○ 위원>

○ 건의 공문은 있는데 거기 공문에 붙여 있는 개정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공개가 되는 것인가,

<○○○ 위원>

○ 지금 전체 공개하면 그것까지 공개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데요.

<○○○ 위원>

○ 그것은 별도 건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일단 물어본 취지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지금 포상금 나간 건수에 불법전매로 신고한 것이 아닌 건수는 몇 건입니까? 포상금이 이미 기지급된,

<○○○ 팀장>

○ 나간 건 중에 불법전매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의 내용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1,147건 중 76건이 확정판결이 났는데 그중에서 53건

만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13건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의 내용이 분양권 전매가 아니고 통장 매매였기 때문입니다.

<○○○ 위원>

○ 그것은 지급이 안 된 겁니까?

<○○○ 팀장>

○ 네. 분양권 전매만 지급했습니다.

<○○○ 위원>

○ 갑설로만 질의했을 뿐이지 지급은 안 된 것이네요.

<○○○ 위원>

○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팀장>

○ 확정판결이 없는 것은 당연히 지급을 안 했죠.

<○○○ 위원>

○ 그 사건에서는 포상금이 지급됐었습니까?

<○○○ 위원>

○ 그 사건은 확정되기는 했는데 범죄사실에 전매가 없습니다.

<○○○ 팀장>

- 판결문상에 분양권 전매가 범죄 이유상에 나와 있다면 지급했는데 이 건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지급된 적이 없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보이고,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데 이미 지급된 것이면 사실은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 위원>

- 질의가 작년 1월 달이고, 포상금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가타부타 결정은 났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유예를 하고 여기에서 개정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상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개정된 후에는,

<○○○ 위원>

- 개정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이니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개정건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질의 취지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감설을설도 하지 않고 진짜 문제가 없냐고 물어본 것이죠.

<○○○ 위원>

-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까?

〈○○○ 팀장〉

○ 네.

〈○○○ 위원〉

○ 그런데 저는 어떻게 처리가 됐든 1번 사안 역시 두 가지 이유에서 마찬가지로 공개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서울시 의사는 드러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법령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권적인 해석이 나면 어느 한쪽이든 서울시의 입장과 관계없이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이것을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의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고 법령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 질의를 한 상태이고, 판단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그러면 일단 의견을 취합해 보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고 하시면 2, 3, 4, 5, 6번에 대해서 의견을 안 주신 분들 먼저 의견을 주시죠.

〈○○○ 위원〉

○ 저 같은 경우에는 ○○○ 위원님 의견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서울시 의견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법령해석에 관한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고, 저 사건에 불법전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회신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

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문서에 대해서 공개가 되더라도 업무에 혼란을 주거나 문제가 되거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 전부공개 의견이신 것이죠?

<○○○ 위원>

○ 네.

<○○○ 위원>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은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에 같은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전체공개로 하겠습니다.

<○○○ 팀장>

○ 1번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2번~6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전체공개 의견이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1번 포함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빼고 공개를 안 했을 경우 왜 1번은 공개 안 하나는 질의가 또 있을 수 있어서 다 공개하겠습니다.

<○○○ 위원>

○ 저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기는 한데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서울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의견이 정해진 의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체공개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1번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계 결과 참석위원 5명 중 ○○○ 위원님은 1번은 비공개 유지하시는 것이죠?

<○○○ 위원>

○ 네.

<○○○ 위원>

- 그러면 4명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46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8-47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조사결과 보고서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47호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주무관님께서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안전감사과의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안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 의안번호 제2018-47호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개인 신분상 조치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이미 결정이 완료되어 대상자에게 통보된 사항으로 내부검토가 종료되었으며, 신분상 조치당사자로서 해당 조사 재심의 신청에 필요한 정보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주무관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 주무관〉

○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 왜 공익신고를 했습니까?

〈○○○ 주무관〉

○ 조사과정에서도 검토해 봤을 때 부정한 목적이 있다라고는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

○ 정보공개를 신청한 분은 이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자기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사유를 적어내기 위한 재심의 신청서 작성에 참고자료로 쓰겠다라고 공개요구를 한 겁니다.

〈○○○ 위원〉

- 처분을 받은 것이 훈계하고 주의 정도인데 이것이 못마땅하다는,

〈○○○ 주무관〉

- 그렇죠.

〈○○○ 위원〉

- 그분이 사실관계에서 뭔가 조사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저는 더 질문 없습니다.

〈○○○ 위원〉

- 통상 감사실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조사들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청구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 주무관〉

-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피조사자들이 간혹 자기가 조사과정에서 받은 문답서를 복사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문답서는 증거서류로서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도는 복사해 주지만 그 외에 조사과정에서 기록된 문서를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

- 보통 감사조사 할 때는 조사대상자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이 경우는 잘 안 됐나 보네요.

〈○○○ 주무관〉

- 문답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 위원〉

- 자료에 보면 대법원 판례도 제시를 하셨는데 대법원 판례 사건하고 성격이 똑같은 사건입니까?

〈○○○ 주무관〉

- 그 건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조사내용이 공개됐

을 경우에는 곤란하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저희 것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같은 조사내용이라는 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사실 저는 고민했던 것이 조사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개인정보와 연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내부조사를 하는 것들이 보고서가 공개될 때 그 조직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아무리 지워도 누군가는 알 수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많죠?

<○○○ 주무관>

-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문맥을 가공해서 제공하지 않는 한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가공해서 제공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혐의자의 처분 내용에 대해서 문맥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면 제대로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조금 두루뭉술한 질문인데 감사업무 성격하고 관련해서 이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특수성과 연관이 많습니까? 대법원 판례는 공개가 되면 소위 내부조사과정에서 노하우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앞으로 조사업무의 수행이 더 어려워진다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무관>

- 네, 저는 전적으로 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 공무원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온 공익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은 공개했을 때 조직 내부의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종합감사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하고 공무원 신분상 비위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들을 공개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 건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9조1호에 타 법률에 공개를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자의 이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조항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

- 청구인이 훈계,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보고서를 입수하려고 하는 것은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추정하시는 겁니까?

〈○○○ 주무관〉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사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재심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리고 보통 훈계나 주의장 같은 내용에는 사실관계만 적시를 하고, 그 내용에 반해서 그것이 훈계의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는 법률적 논지만 재심사유로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보고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 위원>

- 일단 저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보고서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엮혀져 있어 가지고 개인정보를 지운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개인정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또 하나는 조사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앞으로 조사활동 하는 데에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앞으로의 조사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특성상 세밀한 부분까지 깊이 파헤쳐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조직의 안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감사내용 자체에 대한 조직의 불만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향후의 조사업무들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 그러니까 개인정보 측면과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저도 ○○○ 위원님 의견과 동일하고, 이유도 같습니다.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5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 네, 5호, 6호입니다.

<○○○ 위원>

- 저도 비공개 의견이고, 5호에 의해서 감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에 그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도 비공개 의견이고,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5호, 6호에 의해서 비공개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47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8-48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본인이 과거 사용했던 폰 번호를 이용하여 제기한 민원의 내용 및
처리결과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48호 시민봉사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주무관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시민봉사담당관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시민봉사담당관 소관 안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 의안번호 제2018-48호 시민봉사담당관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최근 2년간 본인이 한강로○가 ○○편의점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신고내역 및 행정처분 거부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하여 청구하였으
나, 주관부서에서는 청구서에 기재된 성명과 핸드폰번호로 조회되는 모든 민
원현황에 대하여 공개하면서 행정착오로 부분공개 통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민원상 고지한 다른 폰 번호로 제기한 민원현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주무관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주무관〉

-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우선 부분공개된 것, 그러니까 비공개된 것이 어떠한 정보인 것이죠?

〈○○○ 주무관〉

- 청구인이 최초에 요청한 것은 ○○○ 본인 핸드폰번호에 기입된 민원에 대해서 2년간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서 신고한 내역에 대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 본인의 핸드폰번호에 해당되는 민원을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 위원〉

- 그것은 다 제공을 하셨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비공개로 나간 겁니까?

〈○○○ 주무관〉

- 법률 기재하는 란을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 란을 넣기 위해서 비공개를 부분공개라고 체크한 란에다가 이 내용을 넣다 보니 잘못 넣었습니다.

〈○○○ 위원〉

- 청구인은 이의신청 할 때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왜 ○○○○-○○○○ 민원만 공개하냐? 나는 다른 핸드폰이 더 있다. 이것이 다 내 것이니까 이것도 공개해 달라.’라고 이의제기를 한 것이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것에 대해서 담당주무관님하고 부서에서는 ‘이것은 알아보니 제3자에 대한 번호고, 또한 제3자에 대한 것을 더 공개하라는 것은 이의제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냐.’라는 의견이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본인의 개인정보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요청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 위원〉

-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청구한 것뿐만 아니라, 백 번 양보해서 맞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민원사항인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일단 제3자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번호와 이름 매치정도가 다 있습니까?

<○○○ 주무관>

○ 저희 민원 데이터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 민원 제기할 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120으로 문자로 들어온 민원이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 뒤쪽에 보시면 ○○○ 민원인으로 해당되는 연락처였습니다.

<○○○ 위원>

○ 문자로 민원을 넣었을 때 ‘제 이름이 ○○○입니다.’라고 적지 않고 민원을 그냥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번호가 ○○○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 주무관>

○ 본인이 기재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이 건은 본인이 ‘○○○입니다.’라고 이름을 밝히며 민원을 넣은 겁니다.

<○○○ 위원>

○ 아, 신청 이름을 거기에다가 명시했습니까?

<○○○ 주무관>

○ 네.

<○○○ 주무관>

○ 네. 전화로 민원신청을 할 때도 '제가 누굽니다.'라고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제대로 민원접수를 안 받으니까?

<○○○ 주무관>

○ 민원접수는 받는데 민원처리법에 의하면 민원인 이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사자로 밝힌 사람이 ○○○였고, 그래서 이 번호들은 ○○○ 것이라고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밑에 '본인 ○○○는 재촉구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이 민원들의 내용, 민원제목과 내용들이 공개됐을 경우에 사생

활의 침해라든가 민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됩니까?

<○○○ 주무관>

- 네. 민원처리법 제7조에 의하면 민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다른 사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

- 응답소에 민원을 신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응답소에 들어가면 본인이 신청한 민원들이 다 확인이 되고 뜯 텐데 이것을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이유를 무엇입니까?

<○○○ 주무관>

- 이분이 청구한 내용에 보면 용산구청 직원이 민원을 자기가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도 그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그 직원을 소송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증빙자료를 하나하나 넣을 수 없으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전체 리스트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

- 이 건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의견을 취합해 보겠습니다.

<○○○ 위원>

- 저는 일단 적어도 이것은 제3자의 민원으로 보이고, 그래서 비공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번호가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비공개 결정하시면서 ‘이 번호는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코멘트를 따로 붙여주시는 것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자기가 ○○○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 주무관>

- 네.

<○○○ 위원>

- 사실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원래 청구한 내용에서 비공개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데, 새로운 번호들에 대한 것은 원 청구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것이 이의신청의 형식은 띠고 있지만 저도 새로운 청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각하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때,

<○○○ 주무관>

- 이분은 한강로○가에 대한 불법 행위 ○○편의점에 대해서 본인은 다 받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체가 안

왔으니까 부분공개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 위원〉

-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약간 그 생각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이 번호도 자기의 번호라고 주장한다면 번호 100개 중에 30개만 왔으니 70개를 더 공개하라는 취지라면 그것은 이의신청까지는 적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 그런데 문제가 ‘이 번호가 당신 번호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하면 그것은 비공개입니까? 비공개가 아니라 정보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저는 비공개 결정입니다.

〈○○○ 위원〉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라기보다는 9조1항1호에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법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개사항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민원사항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서 자체는 본인이 신청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번호 즉, 다른 명의의 핸드폰으로 신고된 것까지도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신청취지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법률,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서 못 준다. 그래서 9조1항1호에 따라서 거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결정은 기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람 청구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런 취지 같습니다.

<○○○ 위원>

- 그런데 특정을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그 전화번호가 본인의 것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처리법 7조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

- 비공개 의견이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다른 위원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9조1항1호에 의해서 비공개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48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